

##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  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### 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# 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 '22. 1. 13. 시행)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,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추가되는 사무의 분장을 정하고자 함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업무의 지방의회 이관

### 3. 주요내용

-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되고,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의회 권한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사무과장 업무분장에 추가(안 제2조)
-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(안 제4조)

### 4. 의견제출

-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12월 24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  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(조례심사특별위원회)

- 전 화 : 043)740-3033, FAX : (043)740-3039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영동군의회규칙 제 호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##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조제2항제15호를 제1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 
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5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
- 16. 공무원의 임용·승진·교류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- 17. 공무원의 복무,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 
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- 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  
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- 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- 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- 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- 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- 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  
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| 조례안 내용 | 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|

신·구조문대비표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| 제1조(목적) -----<br>-----<br>----- 제6조에 따라 -----<br>-----<br>----- 필요한 -----<br>-----.  |
| 제2조(사무과장) ① (생략)<br>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담한다.<br>1. ~ 14. (생략)<br><신 설><br><신 설><br><br><신 설><br><br>15. (생략)<br><신 설> | 제2조(사무과장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.<br>1. ~ 14. (현행과 같음)<br>15.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<br>16. 공무원의 임용·승진·교류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<br>17. 공무원의 복무,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<br>18. (현행 제15호와 같음)<br>제4조(정책지원관)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<br>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 |

집·조사·분석 지원
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 
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  
원
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
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 
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  
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 
등 지원

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  
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 
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  
동 지원